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1. 모집인원(남+여 250명)

구분	전형별	영어과 (3학급)	중국어과 (3학급)	일본어과 (2학급)	스페인어과 (2학급)	합계 (10학급)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원내	일반전형	60명	60명	40명	40명	200명
		사회통합전형(20% 이상)	15명	15명	10명	10명	50명
	합 계	75명	75명	50명	50명	250명	
정원외	(국가유공자자녀 : 3% 이내)	특례입학자전형(2% 이내)	2명	1명	1명	1명	5명
		(국가유공자자녀 : 3% 이내)	(3)	(2)	(1)	(1)	(7)

※ 모든 지원자는 전형별, 학과별로 한 과에만 지원해야 하며 입학 후 학과 변경 불가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016 고입 내신성적산출평가 성적(영어)을 제출한 자
-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5)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6) 기타 지원 가능 지역
 -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6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2)~4)'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를 의미함

※ 위 '1)' 항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국내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이 한 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신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나. 전형별 지원자격 (공통사항 이외의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공통사항 중, '가' 항의 어느 한 호를 충족하는 자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 전형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자격의 '가' 항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p>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p> <p>②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p> <p>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p> <p>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p> <p>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p> <p>※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존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p> <p>⑥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 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p> <p>※ 증빙서류 : 학교장 확인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p> <p>⑦ 학교장 추천 학생</p> <p>※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p> <p>※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p> <p>[선정예시]</p> <p>-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p>-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p> <p>-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p> <p>[객관적 증빙서류 예시]</p> <p>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p> <p>->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p> <p>(부정적 예시 : 폐업확인서만으로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p>														
2, 3순위 (사회다양성대상자)	<p>※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2016학년도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 구분</th> <th rowspan="2">연소득환산액</th> <th rowspan="2">월 소득 평균</th> <th colspan="3">건강보험료</th> </tr> <tr> <th>직장 가입자</th> <th>지역 가입자</th> <th>혼합</th> </tr> </thead> <tbody> <tr> <td>8분위</td> <td>71,543,571</td> <td>5,961,964</td> <td>182,127</td> <td>199,987</td> <td>185,538</td> </tr> </tbody> </table> <p>※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p> <p>-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p> <p>-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p>	소득 구분	연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균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소득 구분	연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균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정원내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자격	2, 3순위 (사회다양성대상자)	2순위
			<p>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p> <p>② 조손가정 학생</p> <p>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p> <p>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p> <p>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p> <p>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p>
			3순위
			<p>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p> <p>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p> <p>③ 준사관/부사관 자녀</p> <p>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5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p> <p>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p> <p>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p> <p>⑦ 개척교회(5년이하, 50명이하) 목회자 자녀</p> <p>⑧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준 성적 산출 인원수가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p> <p>⑨ 입양가정 자녀</p> <p>⑩ 장애인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부 또는 모)의 자녀</p> <p>⑪ 해외선교사(2년 이상, 기독교) 자녀</p>
			정원외
			<p>특례입학전형 (2%)</p>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 제3항에 해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제3항)하는 경기도 거주자로, 영어나신 산출이 가능한 자 -> [별첨6] 참조</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p> <p>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p>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p> <p>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p> <p>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p> <p>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p>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p>
			<p>국가유공자자녀 (3%)</p> <p>해당 보호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로 확인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①항 해당자)</p>

3. 전형방법 및 절차

※ 사교육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예시
 -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
- 교내·외 각종 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등을 활용 배제함으로써 선행학습 유발요인 제거

가. 전형 절차 (모든 전형 공통)

전형단계	전형요소	배점	선발인원 규모
1단계	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160점	모집인원의 2배수 (동점자 1단계 전원 선발)
2단계	서류평가 및 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25점 인성 영역 15점	모집인원의 1배수
	합계	200점	

※ 서류평가는 2단계 면접전형에서만 활용하고 1단계에서 활용 금지한다.

나. 전형별 방법

1) 사회통합전형

: 6. 사회통합전형 전형방법에 의한다.

2)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①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함께 선발 하되(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 사정 범위 적용),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의 별도 선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②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단계 탈락자라도 정원의 모집으로 2차 전형을 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2차 전형 시 곧바로 제출 하도록 한다.
- ③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의외로 선배치한다.

4. 1단계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 점수 반영 방법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법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① 영어 내신 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 2학기 성적은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영어 성적까지 반영한다.
 - ※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성적의 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중학교에서 결정한다.
- ②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학기말고사까지 전체 성적을 의미한다.
- ③ 영어 내신 성적은 중학교 2학년 성취평가제, 3학년 석차 9등급제 성적으로 반영한다.
 - : <표1>, <표2>
- ④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3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을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⑤ 결석(병결, 사고, 기타)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지원자의 중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반드시 해당 학기 영어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⑥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2학년의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표3>

<표1> 중학교 2학년 성취평가제 성적 반영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표2> 중학교 3학년 석차 9등급제 성적 반영

등급	국내 중고교 (석차백분율)	학기당 환산점수	비고
1	~ 4% 이하 (4%)	40.0	※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식 환산점수 = 40 - (0.4 x 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frac{(\text{동석차인원수}) - 1}{2}$
2	4% 초과 ~ 11% 이하 (7%)	38.4	
3	11% 초과 ~ 23% 이하 (12%)	35.6	
4	23% 초과 ~ 40% 이하 (17%)	30.8	
5	40% 초과 ~ 60% 이하 (20%)	24.0	
6	60% 초과 ~ 77% 이하 (17%)	16.0	
7	77% 초과 ~ 89% 이하 (12%)	9.2	
8	89% 초과 ~ 96% 이하 (7%)	4.4	
9	96% 초과 ~ 100% 이하 (4%)	1.6	

<표3> 중학교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는 경우 성적 환산 방식

성취도	환산 성취도 등급	학기당 환산 점수
수	A	40
우	B	36
미	C	32
양	D	28
가	E	24

2) 국내 중학교의 영어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또는 제82조 제 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등이 국내 중학교의 일부 학기 영어성적이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 <표4>에 의거 미 존재 학기의 영어성적의 환산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단, 국내 중학교 2, 3학년 영어내신성적(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이 한 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성적 미존재 학기 성적은 같은 학년의 존재 학기 성적으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 2학년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경우, 같은 학기에 해당하는 3학년 성적의 원점수를 <표3>의 환산방식에 따라 성취도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3학년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경우, 같은 학기에 해당하는 2학년 성적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9등급제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② 특례입학대상자로서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지원자**의 경우 영어 내신 성적은 졸업한 외국 학교 성적표를 제출한 후, <표5>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표4> 영어성적 미 존재 학기 환산점수 산출 반영

유형	성취평가제 성취도 등급		석차 9등급제 등급		미 존재학기 반영 영어성적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1	무	유	유	유	2-2학기 -> 2-1학기
2	유	무	유	유	2-1학기 -> 2-2학기
3	유	유	무	유	3-2학기 -> 3-1학기
4	유	유	유	무	3-1학기 -> 3-2학기
5	무	무	유	유	3-1학기(성취도) -> 2-1학기, 3-2학기 -> 2-2학기
6	무	유	무	유	2-2학기 -> 2-1학기, 3-2학기 -> 3-1학기
7	무	유	유	무	2-2학기 -> 2-1학기, 3-1학기 -> 3-2학기
8	유	무	무	유	2-1학기 -> 2-2학기, 3-2학기 -> 3-1학기
9	유	무	유	무	2-1학기 -> 2-2학기, 3-1학기 -> 3-2학기
10	무	무	유	무	3-1학기 -> 3-2학기 3-1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 2-2학기
11	무	무	무	유	3-2학기 -> 3-1학기 3-2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 2-2학기
12	유	유	무	무	2-1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2-2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2학기
13	유	무	무	무	2-1학기(성취도 등급) -> 2-2학기 2-1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 3-2학기
14	무	유	무	무	2-2학기(성취도 등급) -> 2-1학기 2-2학기(석차 9등급제 등급) -> 3-1학기 & 3-2학기
15	무	무	무	무	지원불가

<표5> 외국학교 영어성적에 의한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 산출방법

국내중학교				일반귀국자, 특례입학대상자 (외국학교 성적표)	100점만점
2학년(성취도)		3학년(석차9등급)			
등급	환산점수	등급	환산점수		
A	40	1	40	A ⁰ ~ A ⁺	100-94
		2	38.4	A ⁻	
B	36	3	35.6	B ⁰ ~ B ⁺	89-84
		4	30.8	B ⁻	
C	32	5	24.0	C ⁰ ~ C ⁺	79-74
		6	16.0	C ⁻	
D	28	7	9.2	D ⁰ ~ D ⁺	69-64
		8	4.4	D ⁻	
E	24	9	1.6	F	59 ~

3)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구 비교평가) 응시자

-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 중 영어성적만을 활용한다.
 -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의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는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등급을 3학년 2학기의 영어성적(석차 9등급제 등급)으로 인정하고,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성취도는 2학년 2학기의 영어성적(성취평가제 성취도 등급)으로 인정하여 <표4>의 유형 '6'에 의거해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산출평가에 응시한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산출평가의 영어교과 성적을 <표4>의 유형 '6'에 의거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고입전형 과정에서 반드시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출평가 응시자가 학교생활기록부II가 있을 경우 출결점수는 '나. 출결 점수 산출 방법' 기준으로 반영한다.
- ※ 내신성적 산출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 실시계획을 참고한다.

4) 검정고시 합격자

-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결과가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봉사시간 : 20시간 이상,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봉사한 시간이어야 한다.

나. 출결 점수 산출 방법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출결감점 산출방식 = -[무단결석 일수 × **가중치(0.5)**] (졸업예정자는 2015. 10. 31일자 마감)

무단결석일수	출결감점	비고
1일	-0.5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등을 합하여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
2일	-1	
3일	-1.5	
4일	-2	
5일이상	-2.5	

- 출결 상황은 중학교 전 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출결마감기준일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 무단결석 5일 이상인 자는 출결감점이 최대 -2.5점으로 한다.

5. 2단계 서류 작성 방법 : 자기소개서 [별첨 3]

면접 40점	영역		주요 항목
	자기주도 학습 (꿈과 끼) (25점)	자기주도 과정 (꿈과 끼) (15점) 지원 동기 및 진로계획 (10점)	
			인성 (15점)

1)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①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인성영역 세 항목으로 분리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 (별첨3에 있는 세 항목 제목을 이용하여 작성), **띄어쓰기 제외**
- ②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인터넷 접수
 - 학교 등 특정 장소에 지원자를 소집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③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2)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서류평가 및 면접시 적용 [0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에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자격증 취득 ▪ 교내 · 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재시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우회적 · 간접적인 진술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서류평가 및 면접시 적용 [10%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을 직 · 간접적 · 우회적 표현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골프, 승마 등) ▪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 (사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 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범죄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교사추천서 - 본교는 생략하며, 자기소개서의 ‘**답임교사 확인란**’으로 대신한다.

3) 면접

- ① 학생 개별 면접 실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교복착용을 금지한다.
- ②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한다.
- ③ 면접 시 자기소개서와 같이 배제사항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 및 감점처리하며, 심사제의 및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④ 면접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한다.

6. 사회통합전형 전형방법

가. 1단계 :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1)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2)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은 3순위 대상자를 선발한다.
- 3)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지원학과는 일반전형의 동일한 학과로 한정)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

- 1)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2)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유의사항

- 1)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 3) 상기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 4) 지원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5) 정원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하지 않으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추가모집한다.
- 6) 2·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
- 7)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첨 5] <사회통합전형 세부 안내 자료>를 참조한다.

※ 학교장 추천 학생 → 세부사항은 [별첨 5] 참조

<p>[추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p>[선정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p>[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p>⇒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함 (부적정 예시 : 폐업확인서로만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p>
--

7. 사정 방법 및 기준

가. 1단계

1) 사정 방법 : 영어 내신 + 출결(감점)

① 평가 서류 : 영어교과 등급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Ⅱ 출결사항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서 4번 수상경력, 7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고 단면 출력, 제출

② 전형 절차 : 영어 내신 성적을 평가하여 2단계 대상자(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구분	반영비율	점수	반영 방법
영어 내신 성적	100%	160	영어 내신 성적 산출방법 참조
출결	-	감점	출결 점수 산출방법 참조
합계	100%	160	

2) 사정 기준

① 1단계 총점(160점) 순서로 선발한다.

② 동점자 사정 기준

: 1단계 전형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나. 2단계

1) 사정 방법 : 1단계 점수(160점) + 면접(40점)

① 전형 대상 : 1단계 서류전형에서 선발된 모집인원의 2배수

② 전형 평가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면접

2) 사정 기준

① 2단계 사정 방법을 통해 합산된 총점(200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동점자 사정기준

㉠ 2단계 서류평가 및 면접 점수

㉡ 1단계 출결 환산 점수

㉢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영어 내신 등급 환산 점수
(단,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영어 등급의 환산점수)

㉣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등급 환산 점수

㉤ 2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취도 수준 환산 점수

㉥ 2학년 1학기 영어 내신 성취도 수준 환산 점수

※ 이외의 기준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전형일정

구분	시기	장소	비고
1단계	인터넷 원서접수	2015.11.5(목) ~11.10(화)	본교 홈페이지 및 대행업체 * 4일간 접수 : 5일 09시 시작 ~ 11일 17시 마감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전형료 납부 필수) * 대행업체에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원서 접수
	각종 서류 출력물 제출 (입학원서 등)	2015.11.5(목) ~11.10(화)	본교 입학관리처 * 4일간 접수 : 5일,6일,9일,10일(토·일요일 제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현장방문접수 09:00 ~ 17:00
	1단계 합격자 (면접대상자) 발표	2015.11.13(금) 10:00	본교 홈페이지 * 본교 홈페이지 : 개인별 확인 가능 *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2단계 전형에 응시
2단계	인터넷 접수	2015.11.13(금) ~11.17(화) 17:00 마감	본교 홈페이지 및 대행업체 *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전형료 납부 필수) * 11.17(화) 17:00까지 자기소개서 업로드 가능
	출력물 제출	2015.11.13(금) ~11.17(화) 17:00 마감	본교 입학관리처 * 3일간 접수 : 13일,16일,17일(토·일요일 제외) * 직접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현장방문접수 09:00 ~ 17:00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 지원이 가능 * 2단계 인터넷 접수, 출력, 서명한 다음 직접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
	면접	2015.11.21(토)	본교 고사장 * 수험표 제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날인 지참 * 신분증(학생증, 도서대출증,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함 * 단정한 사복 착용(교복 착용 금지) * 휴대폰 등 각종 통신기기 소지 금지 *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 시작 전 면접 전 대기실 입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5.11.26(목) 17:00	본교 홈페이지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개인별 확인 가능
	합격자 소집	2015.11.28.(토) 14:00~15:30	본교 * 일정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 등록,교복,기숙사 신청 및 학교 전반적 생활 OT
	추가 모집 (정원 미달시)	원서접수기간	2015.11.30(월) ~12.1(화)
전형기간		2015.12.2(수)	
합격자발표		2015.12.3(목)	본교 홈페이지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서류는 1, 2단계 모두 먼저 인터넷에 입력·접수한 후, 반드시 출력물을 제출해야 지원완료 됨

※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전형,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등은 중병 서류 확인이 꼭 필요 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하여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우편 접수 불가)

※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9.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방법

- 1) 본교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및 팝업존에 링크된 인터넷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원서접수를 한다.
 - ① 접수 이후 전형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작성 후 접수한다.
 - ② 전형료 : 1단계 - 5,000원 / 2단계 - 25,000원
- 2)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인터넷 접수 후 출력, 각 관련 발급처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 3) 소속 학교의 출력물은 학급 담임 교사 확인과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다.
- 4)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전형, 경기도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등은 증빙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하여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우편 접수 불가)**
- 5) 유의사항
 - ①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서 4번 수상경력, 7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제외하고 단면 출력, 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한다.**
 - ② 출결마감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Ⅱ 출결 특기사항에 출결마감 기준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미비로 간주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 ③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④ 교육청 공문 지침에 따라 추가 기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기타 서류 안내는 필요시 추후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 공지한다.
 - ⑤ 전형요항 및 전형 전체 기간동안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부 지원자에게 있다.
 - ⑥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⑦ 서류 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는다.
 - ⑧ 어떤 사유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부 지원자에게 있다.
 - ⑨ 불합격한 학생이 추가모집 시 지원할 경우 해당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1단계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지원자 모두 필수(모든 전형 공통)

대 상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입학원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cm 1매 파일업로드) 1부 ⇒ [별첨 1], [별첨 2] 참조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영어내신등급 확인서 1부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 확인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별첨 4] 참조

2) 전형별 추가 제출 서류

특례입학전형	○ 공통서류 및 [별첨 6] 참조
사회통합전형 1, 2, 3순위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또는 모 기준 전가족, 최근 7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전가족, 최근 7일 이내 발급)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1순위 및 3순위 한부모 가정일 경우, 지원자(학생) 기준으로 추가 발급 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5]의 '붙임 4' 참조 (중학교제출)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 [별첨 5]의 '붙임 5' 참조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확인서 각 1부 ⇒ [별첨 5]의 '붙임 7' 참조

① 사회통합전형 1단계 순위별 추가 서류

①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대 상	제 출 서 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최저생계비 150%가구 (구, 차차상위 계층)	직장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국가보훈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서류 없음 (접수 시 명단 확인 함)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1부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법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장애우당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우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유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1부 → [별첨 5]의 '붙임6' 참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그 외 희생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 1부 → [별첨 5]의 '붙임6' 참조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사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납부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 1부 → [별첨 5]의 '붙임6' 참조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사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납부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증명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특례입학대상자 세부서류는 [별첨 5], [별첨 6]을 각각 참조하기 바람

㉔ 2·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대 상		제 출 서 류
2순위 ~ 3순위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1-10월) 1부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재산세 관련 증빙서류(부 또는 모)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현재까지 전체내역 ○ 건강보험자확인(통보)서(부&모 모두 제출)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관계 기관의 확인서 1부
순직군경자녀, 순직소방대원자녀, 순직교원자녀		○ 순직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1부
산재근로자 자녀		○ 재해등급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준사관/부사관자녀		○ 복부확인서(총 재직기간 명시) 1부
개척교회목회자자녀		○ 출석교인 50명이하 및 5년이하 확인서(교단확인필) 1부
해외선교사자녀		○ 해외(2년이상) 파송 기독교 선교사 확인서(교단확인필) 1부
농어촌면단위(도서벽지)소재 중학교졸업예정자		○ 현 재학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 농어촌 면단위(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용 학교장 추천서 1부

㉕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자 공통서류(입학원서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 전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교과 성적 확인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봉사활동 확인서 1부

㉖ 중학교 졸업자

- 지원자 공통서류
(입학원서1부, 영어교과등급확인서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
- 전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영어교과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1부

※ 특성화중학교·학력인정 각종 학교 등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 1) 특성화(학력인정)학교 입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청 인가일 명시)1부
- 2) 산출평가 응시자는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교과 성적표 사본(원본지참)1부 (영어등급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3) 산출평가 미응시자는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평가 미응시 학교장확인서’ 1부

다. 2단계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자기소개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자기소개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반드시 인적사항(이름, 학교명, 주소 등)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표지 : 지원자 인적사항 기재, 담임교사 자필 서명(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본문 : 배제사항(0점처리 및 10%감점) 기재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II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원본 1부 : 1차 제출서류와 동일, - 사본 1부 : 반드시 인적사항(이름, 학교명, 주소 등)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및 간인 후 제출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반드시 제외하고 단면출력 해야 함 ※ 교사추천서는 생략하며,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으로 대신함

10. 기타사항(공통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기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 나. 지원 자격이 사실과 다른 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다. 본교는 전기학교 중 특수목적고등학교 해당학교로 타 동일계 학교 간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라.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하며, 등록 후 입학포기자의 결정은 입학식 이전까지로 한다.
(단, 합격포기자(등록기간 내 입학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 출신 중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며 최종 등록 포기로 간주함)
- 마. 졸업예정자가 3학년 2학기 1차(중간고사) 지필평가 성적이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학년 2학기 영어성적(석차 9등급제 등급)만 기재된 성적증명서(학교장 발급) 제출
-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교감 원본대조필을 받는다.
- 사. 자기소개서에 대한 표절·대필 등의 방지 목적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서 표절·대필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자. 입학전형 성적은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활용하여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
- 차.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 카. 본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년 7월 6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gvfl.hs.kr/>] 입학안내/질의응답/신입학 질의응답]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12-803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20(관산동)
☎ 교무실 : 031-969-9072 행정실 : 031-964-7475 FAX : 031-969-9071

[별첨1] 입학원서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실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접수대조필	※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별	남 · 여	연락처	본인
		우편번호 :	보호자		
학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졸업예정) · 졸업 () · 검정고시합격자]				
지망학과	사회통합 전형 여부		특례입학전형 여부 ()	국가유공자전형 여부 ()	
	기회균등(1순위) - ()			보훈번호	
사회다양성(2,3순위) - ()		(대상유형:)			
출결(1~3학년)	무단결석()회, 무단지각()회, 조퇴()회, 결과()회				
영어성적	구분	2 학 년		3 학 년	
	수험등급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자유학기제 해당 학기		()학년 ()학기			
담임교사 성적확인	()학년 ()반 담임교사 () ①				
사 진 (3cm x 4cm) 최근 3개월 이내	위 학생은 2016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5년 월 일		지원자: (인)		
출신학교장 직인		보호자: (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별첨 2]

입학원서 작성요령

- * 표가 있는 남은 기재하지 않는다.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담임교사 성적확인표와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한다.
- 사회통합전형 응시자는 사회통합전형 여부에 ○표 한다.
- 지원자의 학력란은 해당부분 [졸업예정 · 졸업 · 검정고시합격]에 ○표 한다.
- 출결은 중학교 1-3학년까지이며, 출결은 무단으로 결석·결과·지각·조퇴한 횟수만 기재한다.
- 영어등급기재란에 **중학교 2학년은 성취평가 수준(A~E), 중학교 3학년은 석차9등급제 등급으로 표기한다.**
-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하여 기록한다.
- 지망학과는 반드시 1개 학과만 기재한다.
- 생기부Ⅱ는 4번과 7번이 제외된 원본을 제출한다.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칼라사진을 활용한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직인란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으로 대체한다.
- 전형료와 수수료는 인터넷 접수시 온라인 상으로 납부한다.

제출서류

1단계	2단계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③ 영어 등급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⑥ 지원자격별(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대상자, 국가유공자) 추가서류	① 자기소개서 4부 (원본1부, 사본3부) ②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1단계 합격자 전원 기한 내 제출 ※ 전형요항 '제출서류'를 숙지한 후 미비 서류가 없도록 함

주요 전형 일정

1단계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2015.11.05.(목) 오전 9시 ~ 11.10(화) 오후 5시
면접대상자 발표	2015.11.13.(금) 오전 10시
2단계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2015.11.13.(금) 오전 10시 ~ 11.17(화) 오후 5시
면접전형	2015.11.21.(토) 오전 8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1.26.(목) 오후 5시
합격자 예비소집	2015.11.28.(토) 오후 2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5.11.30.(월)~12.01(화)
추가모집 전형일	2015.12.02.(수) -
추가모집 합격자발표	2015.12.03.(목)
합격자 등록	2016.01.27.(수) 예정

수험표

수험번호	※ 기재 안함
2단계번호	※ 기재 안함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사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출신중학교 직인</div> </div>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1단계 발표 후 출력하여 사진에 학교장 직인>

입학원서 접수증

접수번호	※ 기재 안함
성명	
지원학과	
2016학년도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15년 월 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별첨 3] 자기소개서 표지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온라인 접수 후 출력됨

고양외국어고등학교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 시험번호	
*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원학과	영어과 () / 중국어과 () / 일본어과 () / 스페인어과 ()			
전형구분	일반전형 (), 사회통합전형 (순위/대상유형:), 특례전형()			
2015년 월 일 지원자 _____ 자필서명				

담임교사 확인란				
성명		이메일		직장전화
2015년 월 일				
담임교사 _____ 자필서명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귀하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학교 특성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등을 기술하십시오.
-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기재 시 감점 및 0점 처리됨)
-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글자수 : 한글 초·중·중성의 합이 1글자이며, 알파벳, 특수문자 및 숫자 등 전부 개별 1글자로 계산한다.)
-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십시오.
-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묶어 주십시오.
-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2페이지>

시험번호	
------	--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세 항목의 제목을 그대로 두고 서술하며, 제목(특수문자<>포함)은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7자)

- < 자기주도학습 과정 >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 고양외고 학교특성과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등을 연계하여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 인성영역 >
- 핵심인성요소(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

○ 자기소개서 본문 작성 참고자료 (교육청 매뉴얼)

<지원동기 등>

1. (고양외고에 대해 정확히 알자) 지원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양외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양외고의 특성, 고양외고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같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하자) 지원동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고양외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내용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지원동기를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3. (노력한 과정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에는 고양외고에 지원하기까지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고양외고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노력 및 그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앞으로의 비전을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고양외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만큼, 그 학교에 입학한 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것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외고에 제시하는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일치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5. (체계적으로 쓰자) 지원동기를 쓸 때, 고양외고에 지원하는 이유와 노력의 과정은 중학교 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비전과 진로계획 등은 고양외고 입학부터 졸업 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개의 큰 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지원동기를 보여준다면 플러스 점수가 될 것입니다.

<인성과 관련된 경험 등>

1. (기본적인 것들만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인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고양외고에서 원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스펙 열거하는 열거식보단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레나 에피소드를 쓰자) 인성영역을 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사레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고양외고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자) 고양외고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성영역을 쓸 때에는 성장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모습이 고양외고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진부한 표현은 쓰지 말자) 인성영역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간결하게 쓰자) 인성영역에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레나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①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 ②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교육관련 기관의 진로, 진학설명을 위한 안내의 목적에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주도 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

- 중학교의 경우, 내부 추천 위원회(학교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추천
-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선발

□ (중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천

- ① 절차
 -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심의 → ③ 해당 고교에 추천(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첨부)
 - * 학생 및 학부모는 지원 유형, 제출서류 기입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에 허위·가짜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제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 (구성)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 *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
 -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적합하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 * 심의 시 적격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 중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증** 실시
 -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 신중 검토**
- 증빙 서류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가 판명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先 검증 후 선발 실시**)

붙임 1

2016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최저 생계비 150% 가구**
 (舊,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지원 자격 :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2015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15.7.1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 '15.7.1.인바, 시행일 이후 사회통합전형은 변경 사항 적용 실시

■ **최저생계비 150% 가구(舊, 차차상위계층, 2015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59.2%에 해당(2015년 기준)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 모가 각각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4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3만원(부)+2만4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4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781,168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	52,333	30,803	52,957
4인	2,111,266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	75,980	72,579	76,843

붙임 2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 적용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분위구분 (경제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붙임 3

2015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순위	지정 대상자
법정 대상자	1 순 위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또는 '국가보훈해당자 확인원' 제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공통 지정 권장 대상자	2 순 위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자율 지정 대상자	3 순 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4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⑦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2순위,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붙임 4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 원 신 청 서

신청 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 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2순위	유형 (), 소득분위 ()		
	3순위	유형 (), 소득분위 ()		
제출 서류				
<p>본인은 2016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순위 () 유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p> <p>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또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합격한 후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등 조치가 엄정하게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학 생 _____(인)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학부모 _____(인) 서명</p>				
()중학교장 귀하				

- ※ 신청 번호 : 중학교별로 지원서를 신청한 연번호 기록 (발급대상 별도)
-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입
 - 2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붙임 5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 교 장 확 인 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 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사회통합 전형			
구 분	유 형			
	1순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자				
2순위	유형 (), 분위 ()			
3순위	유형 (), 분위 ()			
2015년 월 일				
추천자 : () 중학교장 (직인)				
()고등학교장 귀하				

-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록 (발급대상 별도)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표기
-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에 '○' 표
 - 2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붙임 6

2016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번호 2015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사회통합전형 1순위(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위 내용이 사실임에 틀림없기에 귀교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1순위:유형⑥)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자 : () 중학교장 (직인) <p style="text-align: center;">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p>			

첨부1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교감원본대조필) 1부

첨부2 객관적 증빙서류 () 부. 끝.

붙임 7

201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 인 서

접수 번호 2015 -

성 명	지원학생		주민등록번호	-
	학부모			-
주 소				
출신 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2순위	유형 (), 소득분위 ()		
	3순위	유형 (), 소득분위 ()		
본인은 2016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순위 () 유형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학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_____(인)/서명 학부모 _____(인)/서명 ()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사회통합 전형 접수 번호 기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 표기

※ 지원 유형

- 1순위 : 지원학생이 해당하는 유형에 '○' 표

- 2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 3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별첨 6]

2016학년도 고양외고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특례입학 전형 지원자 전형 안내

- ※ 특례입학대상자는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 ※ 해외관련 서류 중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 제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 요청시 추후 반환합니다.
- ※ 원서접수일 이후 귀국한 학생은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이 고양외고의 특례입학대상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및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 재학 기간의 성적증명서로 대체)
 -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위 서류의 입증절차는 <참고자료>의 '4' 항에 따름

[모집인원]

전형구분		학과(학급수)					합 계 (10반)
		영어과 (3반)	중국어과 (3반)	일본어과 (2반)	스페인어과 (2반)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2	1	1	1	5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 구분	지 원 자 격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해당자

[제출서류-1단계] 공통서류

구분	제출서류-1단계
공통	1.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을 제출한다. ※ 원서 출력물에 사진(3cm×4cm) 부착(출력) 후 해당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II(특목고 제출용) 1부 ※ 교감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날인 3. 영어교과등급확인서 1부 ※ 교감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전가족주민등록등본 1부 6.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7.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학생) 각1부 8. 외국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학생) 각1부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각1부 10.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재학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 재학 기간의 성적 증명서로 대체) 11.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1부(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12. 특례 입학자격 인정서(경기도 교육청 발급) 또는 특례입학지원자 학부모·학교장 확인서(출신중학교 발급) 1부 13. 외국학교 수학교 이수사항 1부

[제출서류-1단계] 해당자별 특례입학자 제출 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북한이 탈주민 의자녀 (제3호)	비 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 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국내성적이 없는 경우)	○	○	○	○	○		입,퇴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사본제출-원본필수지참)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출국 전 재학(졸업)학교 발급, 최종 재학 년 월 일 학년 명시
	(사본제출-원본필수지참)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 학생	○ 학생		증명서는 김포국제공항, 삼성동 공항터미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 발행, 학생입국일자 기록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의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	○	○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확인정서	(○)	(○)					학생이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관장 확인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					재외 동포 자녀에 한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외국인,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 학생 각 1통	○ 부모, 학생 각 1통					재외 공관장, 외교통상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해당 기관장 확인
외국학교 수학교 이수사항, 체류상황	○	○	○	○	○	○	본교양식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서류의 입증절차는 <참고자료>의 '4' 항에 따름

2016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지원자 학부모·학교장 확인서

성 명	한글/한자		영 문	
	()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출신중학교	중학교 3 학년 반 졸업예정(졸업)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지원자	
			보호자	
거주국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 국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출국전 국내 최종취학학년	학교 학년	취학기간	년 월 일까지	
외국재학학교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호 해당자로 귀교 2016학년도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적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2015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서명)		학부모	_____ 인(서명)
위의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 중학교장 _____ 직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외국학교 수학학교 이수사항

(외국의 초.중학교에서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소재국 ----- 도시	이수 학년 (1~9)	입 학 년월일	전학(졸업) 년 월 일	재학기간 (년, 개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년	()년	()년
			()월	()월	
			()일	()일	()월
외국학교 재학 학기 : ()학기					

※ 외국학교의 경우 학교명은 공식 영문 명칭을 영어로 기재

체 류 상 황

(제82조 ③항 2호 '가'·'나'목 지원자만 작성)

■ 지원자(성명:)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 보호자 - 부 (성명:) / 체류사유 -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 보호자 - 모 (성명:) / 체류사유 -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참고자료>

<p>【관련 규정】</p> <p>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음 →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인원,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p> <p>※ 아래 안내 자료는 귀국자 입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직접 문의 요망</p>

1. 특례 입학 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제3항)

-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라.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외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구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2개학년 이상)	

【 지원자 유의 사항 】

- 1)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보호자'라 함은 민법 제909조 친권자(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 부모 공동)를, '전 가족'이라 함은 친권자와 지원자를 포함합니다.
 - 3) '거주'라 함은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을 의미합니다.
 - 4) '체류'라 함은 거주 기간 내에 당해 국가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 5) '재학기간'이라 함은 거주 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으로 1년 간 이수학기는 2개 학기 기준입니다. (1년 이내 3개 학기 이수는 2개 학기 이수로 간주함)
- ※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3. 구비서류 발행처

구비서류	발행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백스민원 신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사무소 또는 체류국 재외공관장

4. 외국 발급서류(제학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입증절차

가. 학교장 발급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 1) 대상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 대상 국가 및 도시, 학교명을 필히 확인할 것
- 2) 입증방법 : 학교장 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 없음

나. 학교장 발급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1) 대상 : 위의 '가 -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
- 2) 입증방법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① 지원자가 본인의 재학 학교가 해당 국가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 학교 목록 등 제출)
 - ②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 유의 사항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 국가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소개

- 아포스티유 협약은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서,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

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입학할 때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 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105개국) : 2013.6.3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7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51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개국)	미국
중남미 (24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엔티가바루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제도 확인